

형사 판결서 등 열람·복사 제한신청 안내

1. 신청사유

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·복사를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·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의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)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신청자격 :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

피고인·검사·변호인·보조인·범인인 피고인의 대표자·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·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·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·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

3. 신청방법

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(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)의 법원서기관·법원사무관·법원주사·법원주사보에게 신청

4. 근거법률 : 형사소송법 제59조의3